

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 
지원 조례안」

검토보고서

【최봉희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11. 21.

사회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」

## 검토보고서

### 1. 경 과

의안 제655호로 2025년 11월 7일 최봉희 의원 외 6명으로부터  
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 
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 
이동권을 보장하고,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도움으로써  
영등포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및 기준 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지원신청 및 선정 (안 제5조)
- 라. 지원제외 및 지원금 회수 (안 제6조~제7조)
- 라. 지원대상자 관리 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,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(2025. 11. 7.~2025. 11. 13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제정 배경 및 취지

- 우리나라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 하였으며, 이에 따라 노인의 신체기능 저하 및 이동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·의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- 특히,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외부활동이 제한될 경우 근력 저하가 가속화되고,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,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일상적 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조에 따르면 “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”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, 「노인복지법」 1)제4조

---

1)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2)제12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노인 복지증진과 건강증진을 규정하고 있음.

- 한편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했으나 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노인의 경우, 신체활동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용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.
- 이에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- 참고로 다음 표는 영등포구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현황임.

#### □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현황

(단위: 명)

연도	합계	등급외 A, B		그 외(등급외 C, 각하 등)			
		소계	저소득대상자 (기초, 차상위)	일반	소계	저소득대상자 (기초, 차상위)	일반
2023	250	229	67	162	21	6	15
2024	295	280	70	210	15	6	9
2025 (10월 말 기준)	199	191	52	139	8	1	7

- 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2) 제12조(건강증진과 의료제공)  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·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 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·요양 제도 등을 확립·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 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본 조례안의 골자인 「노인」과 「성인용 보행기」의 개념을 명확히 함.
- 안 제3조(지원대상)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등급 외(A, B) 판정을 받은 자 중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재해·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함.
  - 이를 통해 기존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취약 계층 노인에게 실질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, 지원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.
- 안 제4조(지원기준)는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1대의 보행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지원 후 5년이 경과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재해·재난 등으로 손실된 경우에는 최대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규정함.
  - 이를 통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면서도 보행기 노후화나 불가피한 손실 상황에 대비한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, 수혜자의 편의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안 제5조(지원신청 및 선정)는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, 구청장이 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6조(지원제외)는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등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.

- 안 제7조(지원회수)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양도한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,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.
- 안 제8조(지원대상자의 관리)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작성·관리하도록 하여, 지원대상자의 현황과 지원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.

#### 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,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,
  - 이를 통해 보행이 불편한 노인의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, 지역사회 내 노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# 참고 자료

1

## 노인복지법

**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

## 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

**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·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· 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·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·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·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 · 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건강증진과 의료제공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· 연령별 건강 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 · 요양 제도 등을 확립 ·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취약계층노인 등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·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· 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 · 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 · 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.

3

##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**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(이하 “노인성질환예방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